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단5153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나669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단515308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 김광미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애, 이루비, 배수진

변론종결 2022. 12. 22.

판결선고 2023. 4. 6.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019. 11. 1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42,150,41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150,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화성시에서 'E'라는 상호로 산업용비경화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는 김해시에서 'F'라는 상호로 선박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C에게 고무제품을 공급하였는데, 2019. 12. 23.

기준으로 원고가 C에게 고무제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138,546,425원이다(원고는 C에게 2019. 10.경까지 136,441,030원, 2019. 11.경 9,616,255원, 2019. 12.경 29,188,775원 상당의 고무제품을 공급하였고, C로부터 2019. 11. 21.

31,699,635원, 2019. 11. 25. 5,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바, 2019. 11. 13. 기준으로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적어도 136,441,030원이 된다).

3) 원고는 2020. 1.경 C를 상대로 위 2)항과 같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2020. 1. 7. 'C는 원고에게 138,546,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1. 2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차전3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와 C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1) C는 2019.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C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관한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C)이 을(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금의 변제담보로서, 갑이 제3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래 표시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갑,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양도채권)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의 채권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양수할 것을 승낙한다.

<양도채권의 표시>

1. 채권액 142,150,415원

1. 양도인 C(F 대표)가 제3채무자 소외 회사에게 신발 완제품 등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에게 받게 되는 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계속채권

1. 양도채권 상환방법

① 42,150,415원은 양도 통지 후 즉시 수령

② 나머지 100,000,000원은 매월 10,000,000원씩 2019. 12. 31.부터 2020. 9.말일까지 매월 말일에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제2조(양도통지) 양도인 갑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경우 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하여야 한다.

2) C는 2019. 11. 13. 소외 회사에 ‘발신인이 귀사에게 신발 완제품 등을 납품하고 귀사로부터 받게 되는 대금 중 142,150,145원에 대하여 이를 채권양수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하였으므로, 발신인이

귀사에 신발완제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거래대금에 대하여 다음의 상환 방법으로 채권 양수인 주식회사 B에 최우선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이를 통지하였다(을 제4호증).

3) 소외 회사는 2019.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42,150,4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채권가압류를 마친 상태에서 그 가압류를 풀어 자금난 상태를 해소하고 영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에 협조한 것이므로 선의의 채권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가 C에 대하여 1억 원 이상(136,441,03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C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라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원고가 C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그 이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중 2019. 11. 13.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물품대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있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2022. 6. 16.자, 2022. 11. 24.자 각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19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에 부동산, 선박 등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당시 C가 운영한 F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9년경 F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무렵 C가 F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던 예금계좌(갑 제7호증)의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2) C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 기준 발생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물품대금 채권액은 별지 인정금액란 기재 합계액 495,284,417원이다(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 중 2019. 11. 13.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제외하고, 원고가 제외하는 물품대금채권 중 2019. 11. 13. 가까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물품대금채권은 그 거래일이 2019. 11. 13. 이전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포함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무렵 C에게 영업기계, 재고물품, 4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적극재산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2022. 11. 24.자 과세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9년경 C가 F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무렵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약 76,715,800원의 체납세액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C가 운영하던 F 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하여 2018. 10.경부터 합계 23,130,324원 상당의 급여 지급이 지체되고 있었다.

5) 한편 C는 F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9. 1.기 197,069,4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19. 2.기 394,028,85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는바(위 거래에는 C와 원고, 피고의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C는 그 무렵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거래처에 위 돈 합계 591,098,329원(= 197,069,472원 + 394,028,857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이 2019. 12. 31.까지 기간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9년 전체 매출채권액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C가 보유하고 있던 매출채권액은 약 598,861,867원(= 전체 매출채권액 774,880,194원 - 2019. 11. 13.까지 변제금 등 합계 176,018,327원)이므로, 앞서 본 조세채무 등을 고려하면 C가 그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같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초과의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 역시 C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였는바, 그 무렵 C의 자력 상황이 좋지 못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의 변제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양수대금을 수령하여 원고 등 다른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만족을 얻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등을 비롯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C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고, 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마.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인 2019. 10. 10.경 창원지방법원 2019카단1822호로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44,150,415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C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 C의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해제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역시 C로부터 자신의 채권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채권양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았던 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의 양도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하거나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에 2019. 11. 13.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인 42,150,41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채권 중 42,150,415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42,150,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동순위에 있는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 갈 권한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의 양도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의 분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203다5006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42,150,41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2,150,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별지

(단위: 원)

순번	업체명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물품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반제 또는 상계	인정채권액
1	D	2019. 8. 30.	22,917,370	25,209,107	25,209,107	237,370,972
		2019. 9. 27.	82,509,966	90,760,963		
		2019. 10. 30.	75,550,090	83,105,099		
		2019. 11. 14.	55,440,000	60,984,000		
		합계	236,417,426	262,580,079		
2	G	2019. 1. 31.	7,000,000	7,700,000	-	59,863,100
		2019. 1. 31.	-7,000,000	-7,700,000		
		2019. 1. 31.	7,000,000	7,700,000		
		2019. 2. 28.	16,400,000	18,040,000		
		2019. 3. 25.	7,250,000	7,975,000		
		2019. 4. 30.	23,771,000	26,148,100		
		2019. 6. 28.	2,800,000	3,080,000		
		2019. 10. 9.	-2,800,000	-3,080,000		
		합계	54,421,000	59,863,100		
3	H	2019. 1. 25.	2,223,000	2,445,300	2,445,300	818,050
		2019. 5. 31.	2,858,000	3,143,800	1,500,000	
		2019. 7. 31.	1,067,500	1,174,250	1,300,000	
		-	-	-	700,000	
		합계	6,148,500	6,763,350	5,945,300	
4	I	2019. 1. 31.	4,600,000	5,060,000	500,000	10,153,560
		2019. 2. 28.	750,000	825,000	300,000	
		2019. 3. 30.	2,500,000	2,750,000	300,000	
		2019. 5. 31.	5,305,600	5,836,160	1,000,000	
		2019. 6. 28.	1,104,000	1,214,400	3,432,000	
		합계	14,259,600	15,685,560	5,532,000	
5	J	2019. 1. 31.	591,300	650,430	-	45,889,195
			8,829,450	9,712,395		
		2019. 2. 28.	6,943,200	7,637,520		
		2019. 3. 30.	6,692,850	7,362,135		
		2019. 4. 30.	5,701,500	6,271,650		
		2019. 5. 31.	3,710,000	4,081,000		
		2019. 6. 30.	4,454,750	4,900,225		
		2019. 9. 30.	1,656,200	1,821,820		
		2019. 10. 31.	3,138,200	3,452,020		
		합계	41,717,450	45,889,195		
6	K사회복지재단	2019. 2. 1.	45,100,000	49,610,000	49,610,000	44,893,660

		2019. 2. 28.	6,995,000	7,694,500	5,000,000	
		2019. 3. 30.	8,952,200	9,847,420	10,000,000	
		2019. 4. 30.	34,800,000	38,280,000	5,000,000	
		2019. 5. 31.	18,722,400	20,594,640	5,000,000	
		2019. 8. 30.	3,161,000	3,477,100	10,000,000	
		합계	117,730,600	129,503,660	84,610,000	
7	㈜L	2019. 2. 28.	255,000	280,500	280,500	390,830
		2019. 6. 30.	1,020,000	1,122,000	1,122,000	
		2019. 9. 30.	1,020,000	1,122,000	1,122,000	
		2019. 10. 30.	355,300	390,830		
		합계	2,650,300	2,915,330	2,524,500	
8	M	2019. 2. 28.	3,000,000	3,300,000		3,300,000
9	N	2019. 3. 30.	1,000,000	1,100,000	-	4,950,000
		2019. 4. 30.	3,500,000	3,850,000		
		합계	4,500,000	4,950,000		
10	O	2019. 4. 8.	5,000,000	5,500,000	5,500,000	38,223,900
		2019. 4. 30.	34,749,000	38,223,900		
		합계	39,749,000	43,723,900	5,500,000	
11	㈜P	2019. 5. 15.	14,000,000	15,400,000		15,400,000
12	㈜Q	2019. 5. 31.	15,000,000	16,500,000	16,500,000	0
13	R	2019. 5. 31.	1,520,000	1,672,000	-	1,995,400
		2019. 7. 9.	294,000	323,400		
		합계	1,814,000	1,995,400		
14	S	2019. 7. 2.	13,641,600	15,005,760	15,005,760	0
15	T	2019. 7. 5.	7,000,000	7,700,000		7,700,000
16	㈜U	2019. 8. 19.	710,600	781,660	781,660	0
17	V	2019. 8. 30.	1,242,000	1,366,200	-	9,458,350
		2019. 9. 30.	2,323,000	2,555,300		
		2019. 10. 30.	5,033,500	5,536,850		
		합계	8,598,500	9,458,350		
18	W	2019. 9. 10.	8,500,000	9,350,000	9,350,000	0
19	X	2019. 9. 30.	4,965,400	5,461,940	-	9,562,740
		2019. 10. 30.	3,728,000	4,100,800		
		합계	8,693,400	9,562,740		
20	㈜Y	2019. 9. 30.	4,600,000	5,060,000	5,060,000	0
21	㈜Z	2019. 9. 30.	1,260,600	1,386,660		1,386,660
22	㈜AA	2019. 11. 15.	3,570,000	3,927,000		3,927,000
합계						495,283,417

